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력 정책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함에도 대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낮은 신고 인센티브로 인해 신고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소년원 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낮은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 지급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4조, [별표 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다.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개정).

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2]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제4항에 따른 안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구제절차가 끝나는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면(이하 “반

환명령 확정”이라 한다) 부정행위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신고 포상금은 부정행위신고자의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되어 적발한 부정행위 금액(반환명령 금액에 한한다)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금액의 1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명령이 확정되고 제23조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신고자가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내용과 직접적 관련여부 판단,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른 감액 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한다.
 - ③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과 관련된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 일반기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2 1. 일반기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별표 7,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라.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마.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 직종위탁·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자. 법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에는 위탁계약 체결 목적으로 지불한 현금뿐 아니라 현물 또한 포함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다.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3호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라.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 사업주단체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4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마.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징위탁 · 인정제한
바.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5호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시정명령
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6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아.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7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바.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4조 제
2항 제5호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위
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
시정명령

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
2항 제6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

아.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4조제
2항제7호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부 정 행 위	포상금액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100만원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융
4.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	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한다.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훈련과정마다 50만원
6.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행위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부정수금액 구간별로 한다.

부정수금액	포상금
100억원 이상	1억원
50억원 이상	7천만원
10억원 이상	5천만원
1억원 이상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고한 부정행위의 내용

신고일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부정행위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귀하

제출서류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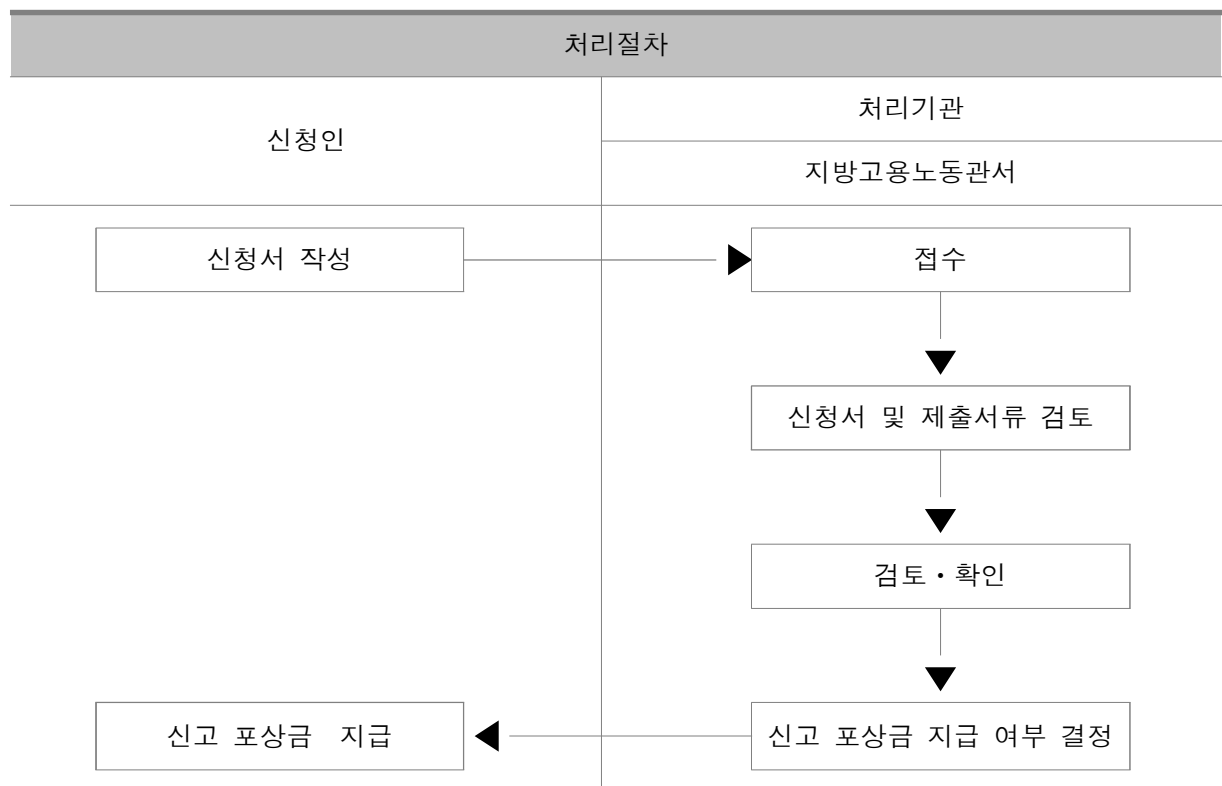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①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 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 체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 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① ----- ----- ----- ----- ----- ----- ----- ----- ----- ----- --. 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 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 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

-----.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구제절차가 끝나는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이하 “반환명령 확정”이라 한다) 부정행위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 제4항에 따른 안내-----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5항-----

-----.

<삭 제>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신고 포상금은 부정행위신고자의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되어 적발한 부정행위 금액(반환명령 금액에 한한다)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금액의 1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

<신 설>

<신 설>

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명령이 확정되고 제23조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신고자가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내용과 직접적 관련여부 판단,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른 감액 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포

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
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과 관련된 관련자를 출
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
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
과를 존중하여 포상금을 결정하
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82